##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32

발의연월일: 2020. 12. 24.

발 의 자:김한정·김승원·전혜숙

이용우・양정숙・인재근

김용민 · 이성만 · 이병훈

송재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총 24개로 여기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포함되어있음.

그런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 형사 분야에 관한 연구 수행 이외에 민사, 상사, 송무,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법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관 명칭이 업무 영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에도 명칭에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우 환경정책・평가 기능에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 관련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을 업무영역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법무ㆍ형사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한국환경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각 연구기관의 역할과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5호,제13호 및 제19호).

법률 제 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제13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5.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 13.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 19. 한국화경연구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는 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 개발연구원 또는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또는 한국환경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